

◆ 政府施策 ◆

기술擔保・保險制度 시범 실시

– 通產部, 기술집약형기업 資金調達 지원 –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돋기 위한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2천년대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일부 기업을 선정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기술담보사업의 경우 산업기술자금 중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96년 2545억원)과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자금(96년 3172억원)등 통산부 소관 정책융자자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술보험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 한정해 기술집약형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기술연구원을 시범사업의 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수입금, 기술평가료, 기술보험료 등으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기술담보·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담보제도는 기업이 금융대출을 받을 때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등도 담보권으로 설정해 주는 제도로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전문가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보험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한편 통산부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인접한 공간에 입주해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신기술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통산부장관이 이를 기술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로 구분·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新素材 첨단산업으로 育成 — 산업화·수요창출에 金融·稅制 혜택 —

통상산업부는 신소재산업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오는 2천년까지 독자적인 기술능력 배양을 통한 신소재 산업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신금속·파인 세라믹스·고분자신소재 등 신소재 분야별로 10大 세부개발과제를 선정, 2천년까지 총 18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최종단계인 신소재의 사업화 및 수요창출을 위해 신소재 가공업체와 연계해 사업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지원 확대와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朴在潤 통산부장관은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제12회 新산업발전民官협력회의에 참석, 신소재산업은 항공기·전기전자·정보통신·생체재료 등 첨단 성장유망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하는 미래 핵심소재산업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소재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통신부는 우선 2천년대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전략과제를 발굴·육성키로 하고 연말까지 신금속·파인세라믹스·고분자신소재 등 분야별로 10大 세부 개발과제를 선정, 2천년까지 공기반자금 780억원, 산기반자금 660억원 등 모두 18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 하부구조 확립을 위해 2천년까지 163억원을 투입, 산·학·연 공동연구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신소재 분야별로 확대하고 신소재 시험·평가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특성화로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소재 사업화 및 수요창출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하고 신소재 가공업체와 연계해 사업시 소요자금을 기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신기술 사업화 및 창업지원자금 등에서 우선지원하고 신기술 창업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투자액의 3%(국산기자재 10%)에서 투자액의 5%(국산기자재 2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3%에서 6~7%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시설투자의 5%(국산기기재 10%)에서 시설투자의 10%(국산기기재 30%)로 크게 늘리고 기술이전 소득세 감면과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산업기술 需要調査 실시 — 通產部, 연구개발비 등 조기 지원 —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기술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통신부가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예년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최근 신제품의 기술수명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기술의 복합화·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부는 이번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 중에서 내년에 지원할 세부기술분야의 지원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나 정부에서 시급히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을 추가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동화·정보화 관련기술 등이 중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공통핵심기술 개발과제 120여개, 중기거점기술 개발과제 6개를 도출할 예정이고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통핵심기술 개발과제에 760억원, 중기거점기술 개발과제에서 619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부는 지금까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803개 과제에 총 667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9억달러의 수입대체 및 5억달러의 수출증대 등 모두 14억달러 이상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3만 SDR이상 구입 國際入札 – 정부계약제도 改善추진 –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등이 발주하는 50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55억원 상당) 이상의 건설공사, 13만 SDR(1억5천만원 상당)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은 모두 국제입찰에 부쳐진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간의 공동도급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가입국 22개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계기로 현행 정부계약제도를 금년말까지 전면 개편하는데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제·개정안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500만SDR 이상의 건설공사, 13만SDR이상의 물품 및 용역이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적용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국내·해외 업체들에게 동등하게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및 10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도’는 개방대상이 아닌 55억원 미만인 공사와 15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가 지역별로 조달키 위해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입찰에 대해 당해지역에 소재한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제’의 적용금액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1~7개군으로 분류하는 제한群제도 대신 국내·외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해 5~6등급으로 분류, 입찰에 제한을 가하는 ‘등급별 사전심사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별로 사전심사하는 PQ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대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工種으로 유지하되 발주관서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지금까지 PQ공사, 턴키 베이스공사에만 허용해 왔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간의 공동도급을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모두 허용키로 했다.

勞使協力 우수업체 稅制等 혜택 – 노동부, 9월1일부터 1년간 최저임금제시 –

노동부는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금융·세제·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의 노사협력 우수업체는 희망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말까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상시근로자 300인 초과 대기업 100개, 300인 이하 중소기업 100개 등 모두 200개 업체가 선정된다.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지난 3년간 노사분규가 단 한건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의 확정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한 업체들은 5개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노사관계·인사·노무관리·근로복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정부로부터 산업평화대상이나 노사화합대상을 받은 업체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한편 노동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액(8시간 근로 기준)을 시 간급의 경우 1,400원, 일급의 경우 11,20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월차·유급휴가·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임금, 가족수당·통근수당·급식비 등 생활보조적 급여 및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한 업체들은 5개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노사관계·인사·노무관리·근로복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정부로부터 산업평화대상이나 노사화합대상을 받은 업체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액(8시간 근로 기준)을 시간급의 경우 1,400원, 일급의 경우 11,20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월차·유급휴가·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임금, 가족수당·통근수당·급식비 등 생활보조적 급여 및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